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홍지광 의원)

의안 번호	23-101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10. .

발 의 자 : 고병준, 권영숙, 남해석,  
백남환, 안미자, 이한동,  
한선미, 홍지광

## 1. 제정이유

관내 전직대통령 관련 기념시설 및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국민의 역사적 인식 함양 및 국가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)

다. 기념사업에 대한 범위(안 제3조)

라. 위탁 대상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(안 제4조 ~ 안 제5조)

마. 기념사업 지원금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## 3. 관계법령

1) 「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

2) 「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의2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붙임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3. 8. 22. ~ 8. 28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마포구에 위치한 전직대통령 기념시설과 관련된 전직대통령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위업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청장의 책무)**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3조(기념사업의 범위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전직대통령을 선양하기 위한 소재 발굴 및 기념사업
2. 전직대통령 추모행사에 관련된 사업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**제4조(사무의 위탁)** 구청장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원)** ① 구청장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·수익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도·감독 등)** ① 구청장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준용)**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7. 9. 22.] [법률 제14618호, 2017. 3. 21., 일부개정]

제5조의2(기념사업의 지원)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1. 1. 5.]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

제6조의2(기념사업의 지원)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1. 9. 6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1.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
2. 기록물,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·정리하는 사업
3. 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·편찬하는 사업
4.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
5. 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
6. 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
7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
②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9. 6.>

1. 문서·도화등 전시물의 대여
2. 사업경비의 일부보조
3.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

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<개정 2011. 9. 6.>

[본조신설 1988. 3. 18.]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5조(지원)

제5조(지원) ① 구청장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·수익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 제2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「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」에 해당

#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임신정
연 락 처	02-3153-8353